

##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

주민등록법 제1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대주가 아래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고하여,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항에 따라 신고거주불명등록이 처리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| 세대주 성명 | 대상자 성명<br>생년월일    | 주소                | 처리결과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김**    | 이**<br>1981-10-28 | 경남 통영시 데메1길 (도남동) | 신고거주불명등록<br>2017-02-17 |

2017년 02월 17일

봉 평 동

